##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95

발의연월일: 2025. 5. 13.

발 의 자:이종배・김성원・강승규

권영진 • 이만희 • 김용태

이양수 · 서천호 · 서지영

김소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정부사업참여 우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받음.

현행 법률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 융합이 활발해져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음을고려할 때, 이들 업종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제기되고 있음.

이에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삭제하는 한편, 명문장수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기여, 기술개발(R&D) 등 혁신 활동을 종합평가해 선정하는 기업인 만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유흥 주점업(룸살롱 등 접객요원을 둔 유흥주점), 무도 유흥 주점업(캬바레, 나이트클럽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카지노, 경마 베팅시설 등), 대부업 등은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 다각화 등의 혁신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환경에 따라 업종 간 매출비중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주된 업종의 유지가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된 업종 유지의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로 완화하고, 대분류를 벗어난 경우에도 업종 변경의 타당성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 법률 제 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자금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본다.
  - 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 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된 업종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① -----일반 유흥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 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 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기타 여신 금융업(소비자를 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상으로 한 단기 자금 대부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추어야 한다.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 업. 이 경우 사업 개시와 계 -. 이 경우<u>다음 각 목의 어</u>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 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본 다. 가. 「통계법」 제22조제1항 <신 설>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

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업

	종을 변경한 경우
<u>&lt;신 설&gt;</u>	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된 업종의 변경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개
	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